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Handel and Gretel

Händel
and Gretel

Händel
and Gretel



정보공개서

(주)핸델과그레텔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09010005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9.01.2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05.27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1 길 34, 비 1 층(신사동) (주)핸델과 그레텔
대표번호(가맹사업부와 동일) Tel 02-548-5974 Fax 02-548-5975
<http://www.handelandgretel.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1 길 34, 비 1 층(신사동) (주)핸델과그레텔 Tel 02-548-5974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I.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당사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2009.03.04	2012.10.22	(주)핸델과 그레텔 사업자등록번호 206-86-70447 법인등록번호 110111-4054419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 년 동안 특수관계인이 없습니다. 당사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가맹본부	(주)핸델과 그레텔	핸델앤그레텔 (Handel and Gretel)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1 길 34, 비 1 층(신사동)	
특수관계인 (임원)	김형수(사내이사) 송봉근(감사)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김형수	02-548-5974	02-548-597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설명
명칭	헨델앤그레텔	-
상호	헨델앤그레텔 OO 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1804040000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1804050000 자세한 내용은 1-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		-

5.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바로 전 3 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 년	14,754,230	15,255,588	-501,357	0	-198,279	-187,278
2023 년	15,241,467	16,593,635	-1,352,167	0	-402,760	-776,360
2024 년	15,123,146	17,419,198	-2,296,051	2,839	-224,312	-943,884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당사는 가맹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1)의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형수	2008.3~2012.10	핸델과그레텔 대표	회사업무 총괄
		2012.10~현재	(주)핸델과그레텔 사내이사	회사업무 총괄
		2014.1~2014.08	핸델과그레텔 중동점 대표	외식업 운영
		2014.5~2017.02	핸델과그레텔 역삼점 대표	외식업 운영
		2018.3~현재	핸델과그레텔 도곡점 대표	직영점 운영
		2018.9~현재	핸델과그레텔 반포점 대표	외식업 운영
		2018.9~현재	Gs25 심산문화센터점 대표	편의점업 운영
		2016.7~현재	Gs25 도곡도서관점 대표	편의점업 운영
	송봉근	2020.03~현재	(주)핸델과그레텔 감사	경영지원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 등록일	출원번호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Handel and Gretel (상표권)	43 류	출원일 2008.03.12 등록일 2009.01.21	출원번호 4120080006643 등록번호 4101804050000	김형수	2029.01.21. (2029.01.21.)
 Handel and Gretel (상표권)	43 류	출원일 2008.03.12 등록일 2009.01.21	출원번호 4120080006639 등록번호 4101804040000	김형수	2029.01.21. (2029.01.21.)

*당사는 상기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로부터 [핸델앤그레텔]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가맹점 오픈일) : 2008 년 6 월 23 일

(직영점 오픈일은 2008 년 3 월 7 일입니다.)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핸델과그레텔	핸델앤그레텔	김형수	2007.09.07~2012.10.22	서울 중구 장충동 2 가 200-102 장충체육관내 1 층
(주)핸델과 그레텔	핸델앤그레텔	김형수	2012.10.22~2018.02.1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2 길 47 (자양동, 프리모빌딩 4 층)
(주)핸델과 그레텔	핸델앤그레텔	김형수	2018.02.12~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1 길 34, 비 1 층(신사동)

3. [핸델앤그레텔] 업종

영업표지	업종	
핸델앤그레텔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	커피

4. [핸델앤그레텔]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 년간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	-	1	1	-	1	1	-	1
서울	1	-	1	1	-	1	1	-	1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핸델앤그레텔] 가맹점 수

당사의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6. [핸델앤그레텔] 외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핸델앤그레텔]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핸델앤그레텔] 가맹점사업자가 2024 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지역	2024 년 말 가맹점 수	2024 년 평균 매출액						비고
		매출액	면적 3.3 m ² 당	상한	면적 3.3 m ² 당	하한	면적 3.3 m ² 당	
전체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서울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부산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대구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인천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광주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대전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울산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세종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경기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강원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충북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충남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전북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전남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경북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경남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제주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2024 년말 영업중인 [핸델앤그레텔] 가맹점이 없습니다.

8. [핸델앤그레텔]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핸델앤그레텔]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	-

9. 가맹지역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핸델앤그레텔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지역본부가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 년]에 [핸델앤그레텔]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비	인터넷 등	연중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금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중구우체국	서울시 중구 반포로 1 (충무로 1 가 21-1)	02-6450- 1114~5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우체국 계좌 있는 사업자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우체국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받아 보관
우체국 계좌 없는 사업자	우체국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 실행
계좌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개설시 필요서류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핸델앤그레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VAT 포함)	지급 기한	비고
가맹비	1,100 만원	계약 체결 시	-가입비(가맹비의 10%) -개점 전 정보·자료제공, 개점 전 운영교육, 오픈 지원(가맹비의 50%) -개점 전 조리/서비스 교육(가맹비의 40%)

*가맹금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③의 경우 당사의 영업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귀하는 당사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환될 수 있습니다.

- ① 당사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당사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2) 보증금 및 반환조건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단위: 만원)

구분	금액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보증금	1,000 (VAT 없음)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기간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VAT 포함)

유형별 구분	금액
합계	1,200
가맹비	1,100
보증금	1,000(VAT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VAT포함, 약 99m²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 m ² 당 금액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합계	가맹본부, 협력업체, 자체 조달	14,520	484	-	-
인테리어	별첨 1_1. 거래상대방 참고	8,250	275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간판		1,100	해당없음		
주방집기		4,400	147		
초도물품		770	해당없음		
기타 개점에 소요될 수 있는 비용 (별도금액)	자체 조달	전기증설, 철거, 냉난방기, 전화, 테라스공사		-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지연이자	가맹본부	상기 지급기간 및 로열티 지급기간, 물품대금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 %)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①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직영점 및 가맹점 개점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업

장 규모, 입점상권 또는 지역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상기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위 표 항목(정보공개서 V-1 내역 중 거래상대방 강제항목은 제외)은 귀하가 직접 설치/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점포 내/외장공사를 직접 시공할 경우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기획관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귀하는 3.3m²당 (18 만 7 천원, VAT 포함)의 기획관리비와, 간판 기획관리비로 당사가 견적한 간판금액의 11%(VAT 포함)를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점포계약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기준	교육 및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특별한 기준 없음
종업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특별한 기준 없음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상기 내역은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로열티	가맹본부	월 22	최초 로열티는 계약체결 시에 1년 선납 (이후 로열티는 매년 계약체결일에 지급)	영업표지 사용대가로 반환될 수 없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III-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2024년 개점한 가맹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해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매출/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요청은 (서면, 이메일, FAX, POS, 발주 프로그램,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30 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귀하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 일 이전에 당사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잔여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본 정보공개서 [1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따라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 3 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 받은 경우에는 제 3 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자가 더 이상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 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귀하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 대해 가맹계약의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에 가맹비(550 만원, VAT 포함), 로열티(264 만원, VAT 포함), 보증금 1,000 만원, VAT 없음)을 납입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 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1,100 만원, VAT 포함), 로열티(264 만원, VAT 포함), 보증금(1,000 만원, VAT 없음)을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귀하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귀하는 “핸델앤그레텔”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귀하의 비용으로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구)핸델앤그레텔” 또는 “전)핸델앤그레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당사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당사가 철거 및 삭제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 귀하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 하여야 합니다.

③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물품을 당사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메뉴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매장을 가도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충성도, 브랜드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장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별첨 1_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지 않으므로 작성을 생략합니다.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사의 [핸델앤그레텔]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2024 년 [핸델앤그레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2) 당사가 2024 년 [핸델앤그레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3. 메뉴,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메뉴의 제한

①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메뉴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구성해야 합니다. 지정된 메뉴를 판매/구성하지 않거나, 지정된 메뉴 외 다른 메뉴를 판매/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계약기간 중 당사가 귀하에게 지정한 메뉴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경영환경의 변화 등 필요 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메뉴 제조에 따른 장비 및 집기 추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구입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메뉴를 변경 및 추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취급하는 메뉴의 제한	위반 시 책임
V-3-3)의 메뉴명 외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메뉴 또는 원/부재료의 판매

귀하는 당사의 허락 없이 메뉴 및 별첨 1 또는 정보공개서 V-1 품목 중 거래상대방 강제품목을 귀하의 점포 외의 다른 곳(온라인 판매 포함)에 판매/유통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메뉴명	Hot		Iced
		Regular	Large	
Espresso	에스프레소	3,000	3,500	
	아메리카노	3,300	3,800	3,800
	카페라떼	3,500	3,800	4,000
	카푸치노	4,000	4,500	

	카페 모카	4,300	4,800	4,800
	화이트 모카	4,300	4,800	4,800
	카라멜 마끼아또	4,300	4,800	4,800
	라즈베리 라떼	4,300	4,800	4,800
	라즈베리 모카	4,300	4,800	4,800
	민트 라떼	4,300	4,800	4,800
	민트 모카	4,300	4,800	4,800
	바닐라 라떼	4,300	4,800	4,800
Tea	스팀밀크	2,700	3,200	4,300
	녹차	3,800	4,300	4,800
	홍차	3,800	4,300	4,800
	녹차라떼	4,300	4,800	4,800
	홍차라떼	4,300	4,800	4,800
	초코라떼	4,300	4,800	4,800
	복숭아 아이스티			4,800
	레몬 아이스티			4,800
Ghiaccio	바닐라라떼			5,600
	카라멜모카			5,600
	체리프레소			5,600
	그린티라떼			5,600
	피나콜라다			5,600
	스트로베리바나나			5,600
Beverage	캔음료			3,300
	병음료			3,800
	생과일주스			5,600
	생과일에이드			5,600
	과일주스			4,300
Sandwich	게살	5,900		
	참치	5,900		
	햄 앤 치즈	6,900		
	B.L.T	6,900		
	치킨데리야끼	6,900		
	치킨브레스트	6,900		
	불갈비	6,900		
	트리플치즈	6,900		

	로스트비프	7,900		
	스파이시 쉬림프	7,900		
Pizza Pala	마르게리따	14,500		
	감자&고구마 / 페페로니 / 그릴야채	15,500		
	불고기 / 콤비네이션 / 하프 앤 하프	16,900		
Salad & Soup	스프	2,900		
	핸델 샐러드	4,900		
	그레텔 샐러드	6,900		
	그릴야채 샐러드	7,900		
Special Menu	베이글크림치즈	3,900		
	와플과 하겐다즈	6,900		
	팬케이크와 월넛	6,900		
	햄 앤 치즈 & 와플	9,900		
	B.L.T & 팬케이크	9,900		
	데리야끼 & 와플	9,900		
	불갈비 & 팬케이크	9,900		
Breakfast Menu (AM 07:30 ~ AM 10:30)	우유와 시리얼	3,600		
	토스트와 우유	3,900		
	토스트와 아메리카노	4,900		
	베이글크림치즈와 아메리카노	4,900		
	햄 에그와 탄산음료	4,900		
	살라미 에그와 탄산음료	4,900		
	베이컨 에그와 탄산음료	4,900		
Dessert	쿠키	1,000		
	머핀	1,900		
	케이크	4,000		
	케이크와 에스프레소 / 아메리카노	6,500		

*상기 메뉴명 및 판매가는 당사의 신메뉴개발 및 메뉴조정안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으며, 변경 및 추가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이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재 안내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와 샌드위치를 주메뉴로 하는 업종	핸델앤그레텔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계약서 명시 또는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귀하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300M (다만, 특수상권은 제외되어 상권에 따라 상기 기준보다 더 넓거나 좁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시 또는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영업지역 범위를 원형이 아닌 다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300M 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역사 및 터미널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에 한해 [핸델앤그레텔]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및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계약기간 만료 전 180 일~90 일 사이 통보)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계약기간 만료 전 60 일 이내 동의여부 회신)→ 영업지역 변경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귀하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5)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귀하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	-

6. 계약기간,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① [핸델앤그레텔]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1 년] 연장됩니다.

2)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계약기간 종료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 ①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 일부터 90 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V-6-2)의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집니다.
- ③ 당사는 귀하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당사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 일부터 90 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다만,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 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아래 표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 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계약 해지 사유
1. 제 1 조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제 6 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① 인/허가 취득 ② 물품의 조달과 관리 ③ 거래상대방에 따른 메뉴 및 원/부재료판매의 제한 ④ 메뉴판매의 제한 등 ⑤ 가격결정의 제한 ⑥ 영업시간 및 일수의 제한 ⑦ 유니폼 착용 ⑧ 광고 및 판촉 ⑨ 경업금지 ⑩ 로열티의 납입 ⑪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비용 ⑫ 관계법령의 준수 ⑬ 고객 컴플레인 관련
3. 제 7 조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제 8 조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제 9 조 당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6. 제 14 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제 18 조제 2 항 귀하의 요건 변동 시 당사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8.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9. 귀하가 당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예: 성추행, 폭행, 욕설 등)를 할 경우
10. 귀하가 계약체결일 또는 점포이전으로 인한 영업중단일로부터 2 개월이 지나도록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경영지원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 일 전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 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⑥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 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 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 개월 2 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⑧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⑨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개월 전) → 양도인/양수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로열티, 보증금 지급)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는 귀하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담보설정, 동업, 전전세, 점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7-1)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 동업자, 대리인, 위임인은 교육비(550만원, VAT 포함)를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V-6-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귀하 및 귀하가 제 3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V-6-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커피와 샌드위치를 주메뉴로 하는 업종	국내 전 지역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핸델앤그레텔]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자율 (당사는 점별 영업시간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귀하 재량껏 상권과 지역 유동인구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하시되, 고객 이용편의를 위해 개,폐점시간을 항상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율 (단, 7 일 이상 연속휴업시에는 당사에 사전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다음과 같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2 명 이상	직접 근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광고의 목적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당사는 [핸델앤그레텔]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개별광고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 일 내 승인여부 통지
	전국 및 지역별 광고	브랜드광고	50% (전체 또는 지역 가맹점에 안분)	광고 또는 판촉행사 계획안 공고 (가맹점부담액 제시)→가맹점 동의 (광고: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판촉: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및 광고 또는 판촉 참 여 여부 결정→광고 또는 판촉 시 행→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광고: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판촉: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동의 시 전체 가맹점 적용)
		브랜드 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판촉	전국 및 지역별 판촉			
	개별 판촉	-	100%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 일 내 승인여부 통지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본인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개별적으로 광고(매스미디어 및 SNS 포함)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전에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사항(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사용 이미지 등)을 당사에게 통지 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사는 10 일 이내에 귀하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기로 합니다.

10.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기간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① 계약해지·종료 시 귀책사유 있는 자가 가맹계약서 제 13 조 제 1 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 상대방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 일 (10 만원)의 위약벌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번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사와 귀하 어느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다음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제 3 자에게 가맹계약서 제 14 조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당사가 가맹사업을 제 3 자에게 기 존 조건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해지일 직전 귀하로부터 발생한 12 개월 “월 평균 당사의 수익” x 10% X 잔여개월수

*영업일이 12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월 평균 당사의 수익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정상적인 영업일이 15 일 미만인 월(月)은 제외하고 15 일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월(月)만 기준에 산입합니다. 다만, 전체 영업일이 15 일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 영업일의 당사의 수익을 일할 계산하여 월 평균 당사의 수익에 산정합니다.

*당사의 수익이라 함은 로열티, 물류수익, 판매수수료 등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귀하를 통해 당사가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수익을 통칭합니다.

④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6 조제 9 항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하는 해당 손해를 당사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⑤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9 조를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⑥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6 조 제 2 항(물품의 조달과 관리) 제 1 호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해당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⑦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당사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⑧ 당사 또는 귀하의 지급요청일에 각 상대방이 지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체하거나 정 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의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⑨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①항 내지 제⑦항에 의한 손해배상 이외에 다른 계약내용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개점절차 및 비용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금액
합계	-	50 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간 제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14 일	
사업설명,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		
가맹계약체결	-가맹금 예치 안내 -가맹계약체결	1 일	
공사 착수	공사 실시	30 일	
교육실시	메뉴 및 서비스 교육 (인테리어 공사 기간 내 실시)	3 일	
영업설비/ 집기 입고	냉장고, 그릇 등 입고 간판설치	2 일	
초도물품 입고	식자재 등 입고	1 일	
가오픈	지인들 대상 시식 및 리허설	1 일	
그랜드오픈	-영업시작 -가맹금 수령	당일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 점포선정이 늦어질 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 가맹점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시
- 종업원 채용이 늦어질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 연락 (방문/전화 등)	귀하가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2	전문가의 자문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3	자문확인서 수령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거래사/변호사로부터 수령 후 해당일자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4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일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 차 :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총 부담액의 30%, 2 차 : 1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 차 : 2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필요 시 진행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개선사항 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안내→개선사항 시정	가맹본부 부담 (단,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운업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해당내용 없음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핸델앤그레텔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및 장소	최소시간	비용	필수여부
신규 교육 (개점 전)	서비스 제공방법 및 개점 전에 필요한 제반 교육	실습교육 (지정 교육장)	3 일 총 18 시간 (점주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초 가맹비에 포함	필수 교육
당사 필요 시 정기교육 또는 부정기 교육	운영방침 및 판매/서비스기법 등	집체교육 or S/V 를 통한 개별 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실시 1 개월 전에 실비 및 최소시간 공지)	실비	필수 교육
관리자(교육에 따라 종업원 포함)교육	메뉴 제공방법 및 관리자(교육에 따라 종업원 포함) 제반 교육	집체교육 or S/V 를 통한 개별교육	3 일 총 18 시간 (점주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550 만원 (VAT 포함)	관리자 지정/교체 시(교육에 따라 종업원 포함) 필수 교육

2.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및 훈련은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교육 · 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① 귀하(교육내용에 따라 귀하의 관리자, 종업원이 포함될 수 있음)는 당사가 제공하는 개점 전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습득 정도가 낮거나, 교육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재교육과 함께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에 재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귀하는 당사의 신메뉴 및 시즌/이벤트 메뉴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메뉴 및 시즌/이벤트 메뉴 교육을 받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을 받지 않거나, 메뉴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③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당사가 교육을 실시할 경우 신메뉴 교육 외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도곡문화정보 도서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8 길 57 지상 2층(도곡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4 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1 년 8 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 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2,839	당사의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입니다.

별첨 1_1.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상기 내역 중 거래상대방 권장품목을 지정 거래상대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달 받을 경우 반드시 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이 아닌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당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귀하가 직접 자체조달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 지정업체로부터 구매 시 차액가맹금 또는 판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당사가 직접 수취하는 품목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차액가맹금 수취품목은 경영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별첨 2. 재무제표(2021~202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재무제표(2023~2024)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	---	----	------

신청인의 계좌	
---------	--

가맹본부의 계좌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제 1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의 7 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 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